

#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7) 상정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7)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김 영 국)

가. 제안이유

-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도에 공개 대상자의 심의와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납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함.  
(안 제23조제1항)
- 재산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동일한 내용이 지방세법에 규정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안 제27조 삭제)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중 연간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불편 해소 및 징세비 절감을 위하여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단서 및 제97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6조제3항 신설)
-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된 경우를 추가함.  
(안 제38조)
- 담배소비세 세율을 법 시행령에 맞추어 인상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함.  
(안 제70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 음

#### 나. 반대토론

없 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97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도에 공개 대상자의 심의와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
- 나.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납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함. (안 제23조제1항)
- 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동일한 내용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안 제27조 삭제)

- 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중 연간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불편 해소 및 징세비 절감을 위하여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단서 및 제97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 마.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6조제3항 신설)
-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된 경우를 추가함. (안 제38조)
- 사. 담배소비세 세율을 법 시행령에 맞추어 인상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 (안 제70조)

##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 제목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납기)”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흡연용의 담배
  - 가. 제1종 켈런 20개비당 641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 다. 제3종 엽켈런 50그램당 3,270원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9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p>	<p>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p> <p>① (생략)</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lt;단서 신설&gt;</p>	<p>제27조의2(납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p> <p>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p>

현행	개정안
<p>4. 5. (생략)            ③ (생략)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p>	<p><u>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li> <li>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li> </ol>

현행	개정안
<p>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7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담배</p> <p>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쫄면은 20개비당 40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p> <p>다. 제3종 엽쫄면 50그램당 2,60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p> <p>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p> <p>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p> <p>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p>	<p>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p> <p>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p> <p>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담배</p> <p>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641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p> <p>다. 제3종 엽쫄면 50그램당 3,27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p> <p>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p> <p>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p> <p>1. <u>퀵런 : 20개비당 100원</u></p> <p>2. <u>각런 : 50그램당 100원</u></p> <p>③ (생략)</p> <p>제97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생략)</p>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u>&lt;단서 신설&gt;</u></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7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p> <p><u>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